##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61 발의연월일: 2020. 12. 21.

발 의 자:양정숙・이용빈・김승원

민형배 • 이용호 • 김경만

김철민 · 안민석 · 김수흥

윤관석 • 이정문 • 서영교

이장섭 · 박재호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드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,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, 휴전선, 원전, 군부대 주변 등 국가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미흡하여 이를 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항공 관련 기관 및 보안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드론 활용

을 촉진하고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17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	제17조(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
축 및 운영) ① ~ ③ (생 략)	축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
	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
	활한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국방
	부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
	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